

급여이용 정보제공

1 운영규정 개요

1. 입소정원

- 58명

2. 입소계약

(1) 입소대상

- **바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바울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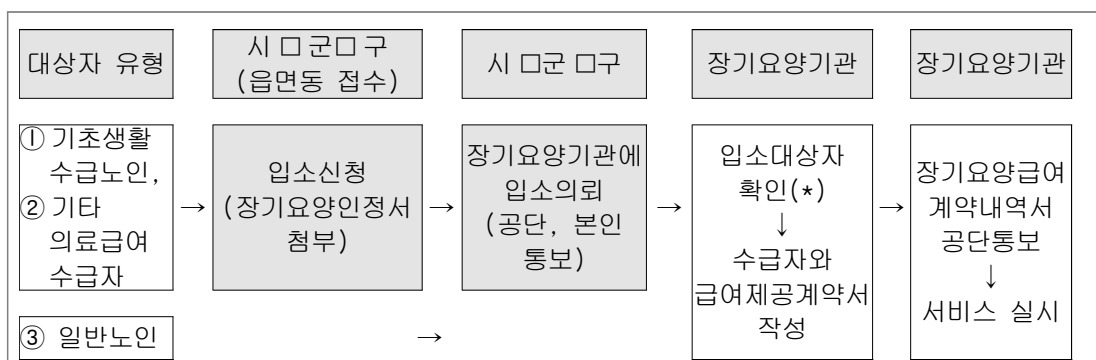
(2)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3,4,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바울요양원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입소 상세 절차>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비용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비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 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감염병검진)서류를 받아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계약 후 시군구에 입소보고 및 공단전산에 계약등록

나. 일반 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4) ~ 6)와 동일

(3) 구비서류

- 바울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입소자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검사자료 및 병적기록자료
7. 신체구속동의서
8.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4) 입소계약

- **바울요양원**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 ⑤ 입소보증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 ⑥ 입소보증금의 반환 -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당해연도 수가인상, 등급변경 및 식재료비 인상 등으로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며 보호자와 재계약 또는 변경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바울요양원**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바울요양원**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

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
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
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
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
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
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⑩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를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행)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기구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⑫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바울요양원**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① 등급별 일별, 월별 이용료 산정표

(2024.1.1.기준)

바울요양원					
등급	외박	1일	자부담	365/12월	자부담
1등급	42,120	84,240	16,850	2,562,300	512,460
1등급(12%)			10,110		307,480
1등급(8%))			6,740		204,980
2등급	39,705	78,150	15,630	2,377,060	475,410
2등급(12%)			9,380		285,250
2등급(8%))			6,250		190,170
3등급	36,900	73,800	14,760	2,244,750	448,950
3등급(12%)			8,860		269,370
3등급(8%))			5,900		179,580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식사재료비 : (1일(3식) 9,300원 × 365/12월 = 282,880원)
- 이따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특별보호 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 상급침실 사용료 (1인실: 1일 3,500원, 2인실 2,000원)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 계약해지 및 퇴소

(1) 계약해지 요건

- **바울요양원** 과 계약해지 하려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퇴소 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보호자)의 해지 - 입소자(보호자)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만료 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바울요양원의 해지

- 입소자의 건강검진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험이 될 때
- 입소자(보호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바울요양원은 입소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보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퇴소

- ① 바울요양원은 바울요양원의 해지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② 입소자(보호자)는 바울요양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바울요양원에게 제출하고 입소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 ③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자(보호자)에게 통보 후 바울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보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 시설은 협약의료기관과 매년 응급이송시스템 구축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의료기관 촉탁의는 1개월에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진찰 등을 실시한다.
- 촉탁의는 진료기록부를 기록하고 시설에서 보관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바울요양원**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바울요양원**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6.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5. 시설물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바울요양원**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 종사자 근무체계

※ 근무편성표 별첨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등급 1, 2, 3, 4, 5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식사재료비

- 1일(3식) 9,300원 X 365/12월 = 282,880원

2. 기타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

- 입소자 개별 부담

5 시설의 현황

□ 개 요

시설장	요양시설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설치일
	정원	현원			
김도영	58		곡성군 석곡면 곡순로 114-96	061-362-3408	2015.04.01

* 직원 : 총 명 (입소자현원에 따라 유동적임)

* 시설 (부지 : 6,420㎡, 건물 : 지상2층(3개동), 사무실 - 1,533㎡)

□ 설립주체 : 개인

□ 연 혁

- 1994. 3. “바울노인복지”설립
- 2004. 7. 1관 신축 준공
- 2005. 7.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 2006. 4. 2관 신축 준공
- 2007. 11. 27.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2008. 5. 29. 노인요양시설 “바울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 2008. 7. 8. 재가장기요양기관 “바울노인복지센터” 단기보호 설치신고
- 2008. 8. 13. 재가장기요양기관 “바울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설치신고
- 2010. 3. 1. 단기 및 주야간보호 폐지
- 2010. 4. 14. 바울노인요양원 구법 ⇒ 신법 변경
- 2015. 4. 1. 명칭 및 대표자 변경 (바울요양원)
- 2021. 11. 26. 정원변경(48명 -> 58명)
- 2022. 01. 01. 시설장변경(김경애 -> 김도영)

□ 시설현황

○ 시설현황

시 설 현 황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시설 현황												
구분	침실 (거실)	사무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 봉사 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치 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개소	36	2	2	1	1	1	2	1	1	14	2	1
침실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수침실	기타						
개소	20	11	3	2	1							

○인력현황(입소자현원에 따라 유동적임)

구 분	계	시설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 사	작업 치료 사	간호 (조무) 사	요양 보호 사	사무 원	관리 인	영양 사	조리 원	위생 원	축탁 의
명	41	1	1	3	1	3	28	1	1	위탁	위탁	1	1

□ 조직 및 직원체계

○ 조직도



○ 직원현황(입소자현원에 따라 유동적임)

구 분	계	시설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 사	작업 치료 사	간호 (조무) 사	요양 보호 사	사무 원	관리 인	영양 사	조리 원	위생 원	축탁 의
명	41	1	1	3	1	3	28	1	1	위탁	위탁	1	1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상품명 : (무)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 보장기간 : 2023년 09월 26일 부터 2038년 09월 26일

2. 화재보험 가입

- 상품명 : (무)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 보장기간 : 2023년 09월 26일 부터 2038년 09월 26일